

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6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5. 06. 14.
제 출 자 : 김영해의원외 6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05년 06월 21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 음

심 사 제 획

1. 활 동 목 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 사 안 건

-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
-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

3. 활 동 기 간

- 2005년 6월 21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- 이만재의원, 차재천의원, 고응종의원, 신교선의원, 심재국의원
우강호의원, 김영해의원

5. 운 영 계 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 고
06.21(화)	제1차 조례특위 (13:30)	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.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	